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동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36

발의연월일: 2024. 7. 9.

발 의 자:유동수・복기왕・윤준병

정진욱 • 문대림 • 박상혁

김교흥 • 허종식 • 정일영

박 정 • 위성락 • 박선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운 용전략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건전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,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·분석 및 부채 관리에 관한의견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 공급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에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두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92조의2).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2조의2(재정운용전략위원회) 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,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둔다.
 - ② 재정운용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 - 1.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전략의 수립·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- 2.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의 수립·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- 3. 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 · 분석에 관한 사항
 - 4.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- 5.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·분석 및 부채 관리에 관한 사항
 - 6.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

- 7. 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 ·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재정운용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한다.
- ④ 그 밖에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재정운용전략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
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위원은
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
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- 6.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 금융의 공급 현황과 정책금융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의 수 립·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
- ③ 재정운용전략위원회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 획재정부차관으로 한다.
- ④ 그 밖에 재정운용전략위원
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
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 다.